

Canon Law Institute

교회법대학원 요람

2023



가톨릭대학교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목 차

I .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1. 학사일정 / 1	
2. 연혁 / 3	
3. 직제 및 구성 / 3	
II . 학칙 및 세칙	
1.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 / 7	
2. 교회법대학원 학사시행세칙 / 49	
3. 교회법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 58	
III . 학사관리	
1. 학기별 주요 학사제도 안내 / 63	
2. 교회법대학원 교과과정 기본이수학점 / 63	
3. 종합시험 / 63	
4. 석사학위청구논문 / 64	
5. 수강신청 / 64	
6. 등록금 반환 / 65	
7. 장학금 제도 / 65	
8. 학교생활 안내 / 65	
IV . 교회법대학원 전공 및 교과과정	
1. 교회법대학원 전공 / 73	
2. 교과과정 / 74	
V . 부 록	
1. 학위청구논문 작성 및 체제 / 80	
2. 성심교정 배치도 / 95	

| .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1. 학사일정

2. 연혁

3. 직제 및 구성

1. 학사일정

(1) 2023년 1학기

2023년

3월							3. 2	1학기 개강&신입생 입학미사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 2-8	수강신청 변경기간
			1	2	3	4	3. 6-10	추가 등록기간
5	6	7	8	9	10	11	3. 22	개강미사(성심)
12	13	14	15	16	17	18	3. 27-31	논문지도교수 승인/변경 신청기간
19	20	21	22	23	24	25	3. 29	수업일수 1/4
26	27	28	29	30	31			
4월							4. 10	부활절 휴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4. 10-14	논문 계획서 제출(5학기 재학생)
						1	4. 10-14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제출(수료생)
2	3	4	5	6	7	8	4. 20-26	중간고사
9	10	11	12	13	14	15	4. 26	수업일수 1/2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월							5. 5	어린이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5. 22-31	석사학위청구논문 원고 제출(수료생)
	1	2	3	4	5	6	5. 24	개교기념미사
7	8	9	10	11	12	13	5. 24	수업일수 3/4
14	15	16	17	18	19	20	5. 25	개교기념미사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월							6. 2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수료생)
일	월	화	수	목	금	토	6. 6	현충일
				1	2	3	6. 15-21	기말고사
4	5	6	7	8	9	10	6. 22	여름방학
11	12	13	14	15	16	17	6. 22-7. 2	석사학위청구논문 인준본 제출(수료생)
18	19	20	21	22	23	24	6. 28	1학기 성적제출 마감
25	26	27	28	29	30		6. 29	1학기 성적확인 및 오류정정
7월							7. 10-28	복학원 제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 10-8. 25	휴학원 제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월							8. 7-10	재학생 수강신청
일	월	화	수	목	금	토	8. 15	광복절
		1	2	3	4	5	8. 17	가을 학위수여식
6	7	8	9	10	11	12	8. 17-25	재학생 본 등록
13	14	15	16	17	18	19	8. 28	2학기 개강
20	21	22	23	24	25	26	8. 28- 9. 1	수강신청 변경기간
27	28	29	30	31				

(2) 2023년 2학기

9월							9. 4-8	2학기 개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9. 11-15	논문지도교수 승인/변경기간
					1	2	9. 11-15	종합시험 응시신청원 제출
3	4	5	6	7	8	9	9. 20	개강미사
10	11	12	13	14	15	16	9. 24	수업일수 1/4
17	18	19	20	21	22	23	9. 28-30	추석
24	25	26	27	28	29	30		
10월							10. 3	개천절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0. 4-5	종합시험
1	2	3	4	5	6	7	10. 9	한글날
8	9	10	11	12	13	14	10. 13	종합시험 결과 발표
15	16	17	18	19	20	21	10. 16-20	2학기 중간고사
22	23	24	25	26	27	28	10. 22	수업일수 1/2
29	30	31					10. 23-11. 3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제출
11월							11. 6	2024학년도 전기 1차 신입생 모집 공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1. 6-12. 7	2024학년도 전기 1차 신입생 모집 원서 접수
			1	2	3	4	11. 6-11. 8	석사학위청구논문 원고 제출
5	8	9	10	11	12	13	11. 17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
14	15	16	17	18	19	20	11. 20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발표
21	22	23	24	25	26	27	11. 22	수업일수 3/4
28	29	30						
12월							12. 11	2024학년도 전기 1차 신입학 전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2. 11-15	기말고사
					1	2	12. 18	겨울방학
3	4	5	6	7	8	9	12. 18-1. 2	석사학위청구논문 인준본 제출
10	11	12	13	14	15	16	12. 22	2학기 성적제출 마감
17	18	19	20	21	22	23	12. 25	성탄절
24	25	26	27	28	29	30	12. 26-28	2학기 성적확인 및 오류정정
2024년							1. 1	신정
1월							1. 8-26	복학원 제출기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8-2. 23	휴학원 제출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월							2. 1-7	재학생 수강신청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 9-11	설 연휴
				1	2	3	2. 15	봄 학위수여식
4	5	6	7	8	9	10	2. 20-23	재학생 본 등록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 연혁

년도	내용
2015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주교단 교황청 교회법평의회 방문: 교회법대학원 설립 논의
2017년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회법대학원 설립 - 초대 교회법대학원장 한영만 신부님 취임
2019년 2월	교황청 문화교육부의 교회법대학원 설립 승인
2022년 4월	교회법대학원장 직무대행 교학부장 지용식 신부님 취임

3. 직제 및 구성

(1) 교회법대학원 직제



(2) 교회법대학원 운영위원회

직책	보직
위원장	교회법대학원장(현 교회법대학원 교학부장 직무대행)
위원	교수 위원 6인

(3) 교회법대학원 교수진

구 분	직 위	성 명/전화번호
교회법대학원 교수 (겸 교회법연구소장)	교수	Fr. 김효석/010-8920-7277
교회법대학원 교수	교수	Fr. 한영만/010-8334-1943
교회법대학원 교수 (겸 교내 사무처장)	조교수	Fr. 안수배/010-4504-0774
교회법대학원 교수 (겸 교회법대학원 교학부장)	조교수	Fr. 지용식/010-8692-5695
교회법대학원 교수	조교수	Fr. 김현조/010-7535-6009

(4) 교회법대학원 교학팀

구 분	성 명	내선번호
교회법대학원 교학팀장	도종국	02-2164-4173
교회법대학원 담당	김나연	02-2164-6521

II . 학칙 및 세칙

1.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

2. 교회법대학원 학사시행세칙

3. 교회법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1.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정 2003. 09. 01.

개정 2024. 10. 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8조와 본교 교육이념에 따라 인간을 존중하는 전문인,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사회인, 인류사회 발전과 평화에 공헌하는 세계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 2023.6.30.>

제2조(대학원의 종류) 본교에는 다음 각 호의 대학원을 둔다. <개정 2007.9.1, 2009.3.1., 2012.5.3., 2014.11.22., 2021.7.30.>

1. 일반대학원

2. 특수대학원 : 보건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의료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임상치과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문화영성대학원, 교회음악대학원, 생명대학원, 교회법대학원, 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글로벌지식경영대학원(이하 "특수대학원"이라 한다) <개정 2017.01.25., 2017.9.22., 2022.09.02.>

3. <삭제 2023.6.30.>

제3조(대학원의 과정) ① 대학원에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하며,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통합과정을 합하여 "각 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9.3.1>

② 일반대학원에 2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부설할 수 있다.

④ 일반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한 교원중에 일정비율 이상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연구관련 실적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1.10.>

제3조의2(계약학과) ① 대학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국가, 지방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학위명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1.3.1]

제4조(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①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9.1, 2009.3.1, 2013.10.8>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② 연구과정 또는 특별과정은 약간명을 선발할 수 있다.

제2장 입학

제5조(입학시기)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지원자격) 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통합과정, 연구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취득예정자 포함)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②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취득예정자 포함)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③ 대학원 학과(전공)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동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요건 외에 추가로 자격요건을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④ 본교에 재직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은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휴직을 조건으로 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장이 입학할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7.22>

제7조(입학지원절차) 대학원에 입학할 지원자는 시행세칙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입학전형)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입학전형방법은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구술시험 등으로 시행한다. 입학전형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3.1, 2006.9.1>

제9조(입학전공분야)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 개설된 학과(전공)중 입학지원자가 지원할 수 있는 전공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편입학) ①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안에서 학과(전공)별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 ② 편입학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 ③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재입학) ①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적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1회에 한하여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제적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재입학을 한 자에게는 제적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입학허가)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사정회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09.3.1., 2023.6.30.>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13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의 정의) 수업연한이라 함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을 말하며, 재학연한이라 함은 각 학위과정의 허용된 수료기간을 말한다.

제14조(수업연한) ①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일반대학원 성심교정 소속 학과의 통합과정 및 성의교정 소속 학과의 박사학위과정에서 수료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을 취득한 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성심교정 통합과정은 1년 이내, 성의교정 박사과정은 6월 이내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7.9.1, 2009.3.1, 2009.11.24, 2012.10.1, 2012.11.28, 2011.3.1., 2014.3.25., 2016.3.1.>

1.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2년, 박사학위과정 3년, 석박사 통합과정 4년. 단, 박사학위과정의 융복합의과학과 및 성심교정 소속학과 2년 <개정 2014.3.25., 2016.6.21., 2017.1.25., 2022.1.15.>

2.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2년 6개월(5학기). 단, 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생명대학원 및 사회복지대학원 2년(4학기), 교회법대학원 3년(6학기), 교육대학원 2년(4학기), 글로벌지식경영대학원 2년(4학기) 이상 <개정 2014.11.22, 2017.1.25. 2017.9.22, 2017.11.22, 2023.1.14.>

3. <삭제 2023.6.30.>

② 수료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을 취득한 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 호와 같이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 2014.3.25., 2016.3.1., 2022.1.15.>

1. 성심교정 석박사 통합과정 1년 이내 <신설 2022.1.15.>

2. 성의교정 박사과정 6개월 이내 <신설 2022.1.15.>

3. 성심교정 경영대학원 글로벌경영학과 1년 이내 <신설 2022.1.15., 개정 2022.04.19.>

제15조(재학연한) ① 각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3.1., 2016.6.21., 2017.1.25.>

1.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3년, 박사학위과정 5년, 통합과정 7년

2.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4년, 단, 교회법대학원은 4년 6개월

3. <삭제 2023.6.30.>

② 재학연한은 정해진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대학원의 경우 각 특수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재학연한을 1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등록·휴학·복학 및 제적

제16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휴학) ① 병역, 임신·출산, 육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의 1/4이상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대학원장 또는 각 특수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09.3.1., 2016.3.22, 2023.6.30.>

②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휴학기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병역, 임신·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학은 제3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22.>

제18조(복학) 복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의 1/4이내에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09.3.1., 2023.6.30.>

제19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정해진 기간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재학년한이 경과하여도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제19조의2(전과) 전과는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3.20.>

제5장 교과과정, 학점, 성적 및 수료

제20조(교과과정) 대학원의 교과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21조(학기당 취득학점)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2조(학업성적) 학업성적의 등급,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점 수	평 점
A+	95 ~ 100	4.5
A°	90 ~ 94	4.0
B+	85 ~ 89	3.5
B°	80 ~ 84	3.0
C+	75 ~ 79	2.5
C°	70 ~ 74	2.0
F	69 이하	0

제23조(유효성적과 수료성적) ① 학업성적이 C⁺이상인 경우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각 대학원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성적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② 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위해서는 총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3.1., 2023.6.30.>

제24조(수료인정 및 최소이수학점) ① 제14조에서 정한 각 학위과정의 수업년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다만, 통합과정에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수업년한 이상을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다만, 일반대학원 신학과는 36학점, 보건대학원, 의료경영대학원, 임상치과학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보건의료경영대학원은 26학점, 교회음악대학원은 35학점, 교회법대학원은 88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9.3.1, 2011.10.18., 2013.10.8., 2016.6.21., 2017.1.25., 2018.4.28., 2021.7.30.>

③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중 인정된 학점을 포함하여 60학점으로 한다.

④ 일반대학원 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54학점으로 한다. 단, 성의교정 의과학과의 경우 55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6.3.1., 2021.3.31., 2024.7.14.>

⑤ <신설 2009.3.1., 삭제 2023.6.30.>

제25조(학사학위과정과의 연계) ① 학업성적이 우수한 본교 학사학위과정 학생이 일반대학원 개설 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학점까지 수강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수강 대상 및 자격, 학점인정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하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학·석사 연계과정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8.1.1., 개정 2021.5.24.>

제26조(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① 대학원 학생이 본교 또는 국내·외의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시행세칙 및 '대학원과특수대학원간의학점교류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에서 정한 수료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라도 제14조에서 정한 수업년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③ 군위탁생의 경우 학·군제휴 대학 및 군내 교육기관간 학점교류를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6.3.1>

④ <신설 2009.3.1., 삭제 2023.6.30.>

제6장 논문 및 학위수여

제27조(학위논문 제출자격) ①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논문제출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각 대학원 특성에 따라 다른 시험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8조(학위논문 심사) ① 학위논문 심사는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 심사위원(석사학위과정은 3인이상, 박사학위과정은 5인 이상)이 행한다.

② 학위논문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신설 2009.3.1., 삭제 2023.6.30.>

④ 각 대학원은 해당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4.3.>

제29조(학위의 수여 및 종별) ①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서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합격한 때에는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단,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논문 제출에 상응하는 대체방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1., 2022.1.15., 2023.6.30.>

② 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하는 자로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의 수여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10.15>

③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9조의2(복수학위 및 공동학위의 수여) 본교는 타 대학교(외국대학 포함)와의 협약에 의하여 복수학위(Dual Degree) 또는 공동학위(Joint Degree)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1.>

제30조(명예박사학위) ①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별표 1의 박사학위 종별에 따른다.

제31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32조(학위 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3.1.>

제7장 연구과정

제33조(설치목적) 대학원에 특수한 과목 또는 과제의 수업에 출석하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학위과정의 연구과정을 부설할 수 있다.

제34조(입학) ①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연구과정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에게는 연구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의 입학전형방법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35조(수업년한) 연구과정의 수업년한은 1년 이내로 한다.

제36조(수료) ① 연구과정 수료자에게는 그 연구 과목 또는 과제에 대하여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 입학시 인정되지 않는다.

제8장 공개강좌

제37조(공개강좌) ① 대학원에 교양,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연구상의 학식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제목 또는 강좌명, 기간, 수강인원, 장소 및 기타 사항은 총장이 결정하여 발표한다.

③ 공개강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38조(학생지도) 대학원 학생은 본 학칙을 준수하고 소속 대학원장, 교학부장,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전공책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장학금)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는 장학금(또는 연구비)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에서 따로 정한다.

③ 군위탁생의 경우 등록금의 50%(입학금 제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3.1>

제40조(징계) ① 대학원 학생이 본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절차 및 종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관련학업보장) 「예비군법」 제10조의2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학업이 보장된다.

1.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에 있어서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2.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과 관련된 자료 제공 또는 보충수업을 받을 수 있다.

3. 그 밖에 해당 동원 또는 훈련을 이유로 성적 처리 등 학업에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4.7.14.]

제10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제41조(조직) ① 일반대학원에는 대학원장, 성심대학원장 및 교정별 교학부장을 둔다. <개정 2017.9.22.>

② 각 특수대학원에는 대학원장과 교학부장을 둔다.

③ <신설 2009.3.1., 삭제 2023.6.30.>

④ 대학원에는 학과(전공)마다 주임교수(책임교수)와 학과장을 둘 수 있으며, 학생별로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3.20.>

⑤ 대학원에는 사무를 수행할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⑥ 대학원 직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2조(대학원위원회) ① 본교에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3.1., 2023.6.30.>

② 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학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신설 2009.3.1., 삭제 2023.6.30.>

제43조(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44조(각 대학원 운영위원회) ① 각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대학원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제45조(준용규정) 수업일수, 휴업일등 본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46조(시행세칙의 제정) 본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본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구 대학원학칙, 산업보건대학원학칙, 사회복지대학원학칙, 심리상담대학원학칙, 의료경영대학원학칙, 교육대학원학칙, 행정대학원학칙, 임상치과학대학원학칙, 임상간호대학원학칙, 문화영성대학원학칙, 경영대학원학칙, 교회음악대학원학칙

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학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구 학칙이 폐지됨에 따라 본 학칙의 시행 당시의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3조제3항, 제37조, 별표1, 별표2)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일반대학원 입학정원의 총정원제(별표1)는 200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조, 제14조, 제24조②, 별표1, 별표2)은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하되, 2005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결과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전공 신설 및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산업보건대학원 각 전공의 재학생은 전공명칭이 변경되더라도 개정전 본 학칙에 규정된 전공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②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행정대학원 국제학과 재학생은 전과하지 않는 한 학위수여때까지 동 학과 소속을 유지한다.

③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문화영성대학원 각 전공의 재학생은 학과체제로의 변경에 따라 문화영성학과로 그 소속을 변경한다.

④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임상치과대학원 심미수복치과학과 재학생은 학과 명칭변경에 따라 치과보철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⑤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임상간호대학원 감염간호전공의 재학생은 전공 명칭변경에 따라 감염관리간호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개정학칙(제4조 별표1, 별표2)은 2005년 9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6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결과는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 2항은 2006년 3월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학과, 전공 신설 및 폐지에 따른 조치) ①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의학과 의학세포생물학, 생명의과학, 면역·미생물학, 신경생물학, 중앙생물학 전공의 재학생과 의과학협동과정 재학생은 생명의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② 2005학년도 이전에 의학과 의학세포생물학, 생명의과학 전공을 수료한 학생과 의과학협동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수료당시의 학적을 유지한다.

③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IT전공) 학위는 2004학년도후기 졸업자부터 수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제4조 별표2)은 2005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보건대학원 역학및보건통계학전공의 재적생은 전공 명칭변경에 따라 역학및임상시험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상담심리대학원 영성심리상담학과의 재적생은 전공 명칭변경에 따라 영성상담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제4조 별표1, 별표2)은 2005년 10월10일부터 시행하되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제8조, 제26조, 제39조)은 2006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개정학칙(제4조, 제8조, 별표1, 별표2)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7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결과는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2의 문화영성대학원 학위종별은 2005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개정학칙(제2조, 제4조 별표1, 별표2, 제14조1항2호)은 2007년 9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8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결과는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2의 문화영성대학원 문화영성학과 세부전공은 2007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2는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개정학칙은 2009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10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결과는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영대학원의 수업년한 변경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개정학칙은 201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하되, 2012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결과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2의 문화영성대학원 문화영성학과 세부전공은 2011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공 명칭 변경 및 폐지에 따른 조치) ① 201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임상치과대학원 치과 보철학과에 재적생은 학과 명칭 변경에 따라 보존보철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201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교육대학원의 중국어교육전공, 영양교육 전공, 교육공학 전공 재적생은 전공이 폐지되더라도 개정전 본 학칙에 명시된 전공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1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4조 1항 1호 및 별표 1)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폐지에 따른 조치) 201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의학통계학과 재적생은 개정전 본 학칙에 규정된 학과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제6조 제4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4조 제1항 제2호, 별표 2)은 2012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12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4조 제24조)은 2013년 10월 8일부터 시행하되, 2012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 2)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문화영성대학원 입학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학 당시의 전공명 및 학위명을 표기한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4조, 별표 1)은 201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되, 제14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별표 1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4조의 개정 학칙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생명과학과 재적생은 학과명칭 변경에 따라 2014년 3월 1일부터 의생명건강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개정 학칙(별표 1, 별표 2)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201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의료정보학전공 재적생은 변경 전 학칙에 명시된 전공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개정 학칙(제2조, 제14조, 별표2, 별표4)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14조 교육대학원 수업연한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특수대학원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특수대학원 통합에 따른 개정 학칙은 2015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한류대학원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해당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 별도의 심의를 거쳐 글로벌융합대학원 내의 학과(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2.27.>

제3조(수업연한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본 학칙 제14조에 의하여 글로벌융합대학원 수업연한이 2년(4학기)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 학칙 변경 당시 행정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 시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신설 2014.12.27.>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 4)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5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4조, 제24조, 제32조, 별표 1, 별표 4)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

하되, 별 표 4는 2015년 11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7조)은 2016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9조)은 2016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4조, 제15조, 제24조, 별표1)은 201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1, 별표2)은 2016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201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의료정책학전공 및 의료경영정보학전공 재적생은 변경 전 학칙에 명시된 전공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 별표1, 별표2)은 2017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 3)은 2017년 5월 13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의학전문대학원 폐지를 위한 경과조치) ① 의학전문대학원은 2017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재적생이 모두 졸업하는 시점에서 이를 폐지한다.

② 구 학칙 시행 당시 의학전문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과·전공 및 학위종별

을 별표 3과 같이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1조, 별표 4)는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4조, 별표2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글로벌융합대학원 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① 글로벌융합대학원 분리에 따른 개정 학칙은 2018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글로벌융합대학원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해당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 별도의 심의를 거쳐 경영학과는 경영대학원, 행정학과는 행정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4조, 별표 1, 별표 2)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교육학박사 신설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제14조의 사회복지대학원 수업연한 및 별표 2의 사회복지대학원 설치학과전공 및 학위종별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폐지 및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폐지되는 사회복지대학원 청소년복지학과, 장애인복지학과 재적생은 졸업까지 해당 학과 학적을 유지한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쳐 전과를 허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2)은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4조, 별표1, 별표2)은 201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단, 별표1, 별표2의 2019학년도 입학정원 조정은 2019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2)은 2018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2)은 2019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1, 별표2)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보건대학원 인간공학 및 재활 보건학전공의 재적생은 전공 명칭 변경에 따라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9조의2, 제41조)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별표2)은 202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1, 별표2)은 202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1>)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4조, [별표1])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되, 제24조 제4항은 2021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별표1]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5조)은 202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 중 별표1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2조, 제24조, 별표2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공연예술문화학과 학위종별 명칭 변경은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특수대학원 통합에 따른 개정 학칙은 2022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202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보건대학원, 의료경영대학원 재학생은 졸업 시까지 해당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 별도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내의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별표1)은 202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4조, 제29조, [별표1], [별표2])은 202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4조)은 202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22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조, [별표 2])은 202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4조, [별표 1])은 2023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조, 제2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41조, 제42조, [별표 1], [별표 3])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별표 1], [별표 2])은 2023년 10월 05일부로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3조, [별표1])은 2024년 01월 10일부로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8조)은 2024년 4월 3일부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4조, 제40조의2, [별표1], [별표2])은 2024년 7월 14일부로 시행하되,
제40조의2는 2024년 2월 20일부로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별표1], [별표2])은 2024년 10월 2일부로 시행한다.

2019학년도 일반대학원 학과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교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학 과	학위종별	입학정원	학 과	학위종별	입학정원
성신	신학과	신학석사	50	신학과	신학박사	5
성심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147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86
	불어불문학과	문학석사		영어영문학과(통합)	문학박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국사학과	문학박사	
	중어중문학과	문학석사		종교학과	문학박사	
	일어일본문화학과	문학석사		철학과	문학박사	
	국사학과	문학석사		사회복지학과(통합)	문학박사	
	종교학과	문학석사		심리학과	문학박사	
	철학과	문학석사		경영학과(통합)	경영학박사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행정학과(통합)	행정학박사	
	심리학과	문학석사		한국어교육학과	교육학박사	
	사회학과	문학석사		화학(통합)	이학박사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생명과학(통합)	이학박사	
	국제학과	정치학석사		물리학과(통합)	이학박사	
	법학과	법학석사		식품영양학과	이학박사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생활문화학과	이학박사	
	한국어교육학과	교육학석사		컴퓨터공학과(통합)	공학박사	
	화학과	이학석사		생명공학과(통합)	공학박사	
	생명과학과	이학석사		정보통신전자공학과(통합)	공학박사	
	수학과	이학석사		디지털미디어학과(통합)	공학박사	
	물리학과	이학석사		약학과(통합)	약학박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석사				
	소비자주거학과	이학석사				
	의류학과	이학석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생명공학과	공학석사				
	정보통신전자공학과	공학석사				
	디지털미디어학과	공학석사				
	음악과	음악학석사				
	아동학과	이학석사				
	약학과	약학석사				
협동과정 (학과간)	독서학과	문학석사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성의	의학교육학과	의학교육학석사	106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177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의학과	의학석사		의학과(통합)	의학박사	
	의생명·건강과학과	이학석사		의생명·건강과학과(통합)	이학박사	
협동과정 (학과간)				융복합의과학과	이학박사	
				생명윤리학과	생명윤리학박사	
총계	36개 학과		303	27개 학과		268

※ 「(통합)」은 석박사 통합과정을 두고 있는 학과임.

2020학년도 일반대학원 학과·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교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학 과	학위종별	입학정원	학 과	학위종별	입학정원
성신	신학과	신학석사	50	신학과	신학박사	5
성심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147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96
	불어불문학과	문학석사		영어영문학과(통합)	문학박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국사학과	문학박사	
	중어중문학과	문학석사		종교학과	문학박사	
	일어일본문화학과	문학석사		철학과	문학박사	
	국사학과	문학석사		사회복지학과(통합)	문학박사	
	종교학과	문학석사		심리학과	문학박사	
	철학과	문학석사		경영학과(통합)	경영학박사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행정학과(통합)	행정학박사	
	심리학과	문학석사		한국어교육학과	교육학박사	
	사회학과	문학석사		화학(통합)	이학박사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생명과학(통합)	이학박사	
	국제학과	정치학석사		물리학과(통합)	이학박사	
	법학과	법학석사		식품영양학과	이학박사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생활문화학과	이학박사	
	한국어교육학과	교육학석사		컴퓨터공학과(통합)	공학박사	
	화학	이학석사		생명공학과(통합)	공학박사	
	생명과학	이학석사		정보통신전자공학과(통합)	공학박사	
	수학과	이학석사		디지털미디어학과(통합)	공학박사	
	물리학과	이학석사		약학과(통합)	약학박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석사				
	소비자주거학과	이학석사				
	의류학과	이학석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생명공학과	공학석사				
	정보통신전자공학과	공학석사				
	디지털미디어학과	공학석사				
	음악과	음악학석사				
	아동학과	이학석사				
	약학과	약학석사				
협동과정 (학과간)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글로벌한국문화융합학과	한국문화학석사		글로벌한국문화융합학과(통합)	한국문화학박사	
	노년학과	노년학석사		노년학과(통합)	노년학박사	
	중독학과	중독학석사		중독학과(통합)	중독학박사	
	디지털사회정책및서비스학과	문학석사		디지털사회정책및서비스학과(통합)	문학박사	
	인공지능융합학과	공학석사		인공지능융합학과(통합)	공학박사	
성의	의학교육학과	의학교육학석사	106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167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의학과	의학석사		의학과(통합)	의학박사	
협동과정 (학과간)	의생명·건강과학과	이학석사		의생명·건강과학과(통합)	이학박사	
				융복합의과학과	이학박사	
총계	42개 학과		303	34개 학과		268

※ 「(통합)」은 석·박사 통합과정을 두고 있는 학과임.

2021학년도 일반대학원 학과·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교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학 과	학위종별	입학 정원	학 과	학위종별	입학 정원
성신	신학과	신학석사	50	신학과	신학박사	5
성심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147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96
	불어불문학과	문학석사		영어영문학과(통합)	문학박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국사학과	문학박사	
	중어중문학과	문학석사		종교학과	문학박사	
	일어일본문화학과	문학석사		철학과	문학박사	
	국사학과	문학석사		사회복지학과(통합)	문학박사	
	종교학과	문학석사		심리학과	문학박사	
	철학과	문학석사		경영학과(통합)	경영학박사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행정학과(통합)	행정학박사	
	심리학과	문학석사		한국어교육학과	교육학박사	
	사회학과	문학석사		화학과(통합)	이학박사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생명과학과(통합)	이학박사	
	국제학과	정치학석사		물리학과(통합)	이학박사	
	법학과	법학석사		식품영양학과	이학박사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생활문화학과	이학박사	
	한국어교육학과	교육학석사		컴퓨터공학과(통합)	공학박사	
	화학과	이학석사		생명공학과(통합)	공학박사	
	생명과학과	이학석사		정보통신전자공학과(통합)	공학박사	
	수학과	이학석사		디지털미디어학과(통합)	공학박사	
	물리학과	이학석사		약학과(통합)	약학박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석사				
	소비자주거학과	이학석사				
	의류학과	이학석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생명공학과	공학석사				
	정보통신전자공학과	공학석사				
	디지털미디어학과	공학석사				
	음악과	음악학석사				
	아동학과	이학석사				
	약학과	약학석사				
협동과정 (학과간)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중독학과	중독학석사		중독학과(통합)	중독학박사	
	의료인공지능학과	공학석사		의료인공지능학과(통합)	공학박사	
	공연예술문화학과	공연예술학석사		공연예술문화학과(통합)	공연예술학박사	
성의	의학교육학과	의학교육학석사	106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167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의학과	의학석사		의학과(통합)	의학박사	
	의생명·건강과학과	이학석사		의생명·건강과학과(통합)	이학박사	
	정밀의료 빅데이터학과	의학석사, 이학석사		융복합의과학과	이학박사	
협동과정 (학과간)				생명윤리학과	생명윤리학 박사	
총계	40개 학과		303	31개 학과		268

※ 「(통합)」은 석·박사 통합과정을 두고 있는 학과임.

2022학년도 일반대학원 학과·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illegible]

※ 「(통합)」은 석·박사 통합과정을 두고 있는 학과임.

2023학년도 일반대학원 학과·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교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학 과	학위종별	입학 정원	학 과	학위종별	입학 정원
성신	신학과	신학석사	50	신학과	신학박사	5
성심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147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96
	불어불문학과	문학석사		영어영문학과(통합)	문학박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중어중문학과	문학박사	
	중어중문학과	문학석사		일어일본문화학과(통합)	문학박사	
	일어일본문화학과	문학석사		국사학과	문학박사	
	국사학과	문학석사		종교학과	문학박사	
	종교학과	문학석사		철학과	문학박사	
	철학과	문학석사		사회복지학과(통합)	문학박사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심리학과	문학박사	
	심리학과	문학석사		경영학과(통합)	경영학박사	
	사회학과	문학석사		행정학과(통합)	행정학박사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한국어교육학과	교육학박사	
	국제학과	정치학석사		화학(통합)	이학박사	
	법학과	법학석사		생명과학(통합)	이학박사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수학과	이학박사	
	한국어교육학과	교육학석사		물리학과(통합)	이학박사	
	화학	이학석사		식품영양학과	이학박사	
	생명과학	이학석사		생활문화학과	이학박사	
	수학과	이학석사		컴퓨터공학과(통합)	공학박사	
	물리학과	이학석사		생명공학과(통합)	공학박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석사	정보통신전자공학과(통합)	공학박사			
공간디자인·소비자학과	이학석사	디지털미디어학과(통합)	공학박사			
의류학과	이학석사	에너지환경공학과(통합)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약학과(통합)	약학박사			
생명공학과	공학석사	인공지능학과(통합)	공학박사			
정보통신전자공학과	공학석사					
디지털미디어학과	공학석사					
에너지환경공학과	공학석사					
음악과	음악학석사					
아동학과	이학석사					
약학과	약학석사					
인공지능학과	공학석사					
협동과정 (학과간)	교육학과 중독학과 의료인공지능학과 공연예술문화학과	교육학석사 중독학석사 공학석사 예술학석사		교육학과 중독학과(통합) 의료인공지능학과(통합) 공연예술문화학과(통합)	교육학박사 중독학박사 공학박사 예술학박사, 음악학박사	
성의	의학교육학과 간호학과 의학과 의생명·건강과학과 정밀의료 빅데이터학과	의학교육학석사 간호학석사 의학석사 이학석사 의학석사,이학석사	106	간호학과 보건학과 의학과(통합) 의생명·건강과학과(통합) 융복합의과학과	간호학박사 보건학박사 의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167
협동과정 (학과간)				생명윤리학과	생명윤리학 박사	
총계	42개 학과		303	36개 학과		268

※ 「(통합)」은 석·박사 통합과정을 두고 있는 학과임.

2024학년도 일반대학원 학과·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교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학 과	학위종별	입학 정원	학 과	학위종별	입학 정원
성신	신학과	신학석사	50	신학과	신학박사	5
성심	국어국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본문화학과 국사학과 종교학과 철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경영학과 국제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한국어교육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식품영양학과 공간디자인·소비자학과 의류학과 컴퓨터공학과 생명공학과 정보통신전자공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에너지환경공학과 음악과 아동학과 약학과 인공지능학과	문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경영학석사 정치학석사 법학석사 행정학석사 교육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의학석사 약학석사 공학석사	147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통합) 중어중문학과(통합) 일어일본문화학과(통합) 국사학과 종교학과 철학과 사회복지학과(통합) 심리학과(통합) 경영학과(통합) 행정학과(통합) 한국어교육학과 화학과(통합) 생명과학교과(통합) 수학과 물리학과(통합) 식품영양학과 생활문화학과 공간디자인학과 컴퓨터공학과(통합) 생명공학과(통합) 정보통신전자공학과(통합) 디지털미디어학과(통합) 에너지환경공학과(통합) 약학과(통합) 인공지능학과(통합)	문학박사 문학박사 문학박사 문학박사 문학박사 문학박사 문학박사 문학박사 문학박사 경영학박사 행정학박사 교육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96
협동과정 (학과간)	교육학과 중독학과 의료인공지능학과 공연예술문화학과 예술미디어융합학과	교육학석사 중독학석사 공학석사 예술학석사 예술학석사 음악학석사		교육학과 중독학과(통합) 의료인공지능학과(통합) 공연예술문화학과(통합) 예술미디어융합학과(통합)	교육학박사 중독학박사 공학박사 예술학박사, 음악학박사 예술학박사 음악학박사	
성의	의학교육학과 간호학과 의학과 의과학과 정밀의료 빅데이터학과	의학교육학석사 간호학석사 의학석사 이학석사 의학석사, 이학석사	126	간호학과 보건학과 의학과(통합) 의과학과(통합) 융복합의과학과	간호학박사 보건학박사 의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157
협동과정 (학과간)				생명윤리학과	생명윤리학 박사	
총계	43개 학과		323	38개 학과		258

※ 「(통합)」은 석·박사 통합과정을 두고 있는 학과임.

2025학년도 일반대학원 학과·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교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학 과	학위종별	입학 정원	학 과	학위종별	입학 정원
성신	신학과	신학석사	50	신학과	신학박사	5
성심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135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108
	불어불문학과	문학석사		영어영문학과(통합)	문학박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중어중문학과(통합)	문학박사	
	중어중문학과	문학석사		일어일본문화학과(통합)	문학박사	
	일어일본문화학과	문학석사		국사학과	문학박사	
	국사학과	문학석사		종교학과	문학박사	
	종교학과	문학석사		철학과	문학박사	
	철학과	문학석사		사회복지학과(통합)	문학박사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심리학과(통합)	문학박사	
	심리학과	문학석사		경영학과(통합)	경영학박사	
	사회학과	문학석사		행정학과(통합)	행정학박사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한국어교육학과	교육학박사	
	국제학과	정치학석사		화학과(통합)	이학박사	
	법학과	법학석사		생명과학과(통합)	이학박사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수학과	이학박사	
	한국어교육학과	교육학석사		물리학과(통합)	이학박사	
	화학과	이학석사		식품영양학과	이학박사	
	생명과학과	이학석사		생활문화학과	이학박사	
	수학과	이학석사		공간디자인학과	이학박사	
	물리학과	이학석사		컴퓨터공학과(통합)	공학박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석사		생명공학과(통합)	공학박사	
	공간디자인·소비자학과	이학석사		정보통신전자공학과(통합)	공학박사	
	의류학과	이학석사		디지털미디어학과(통합)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에너지환경공학과(통합)	공학박사	
	생명공학과	공학석사		약학과(통합)	약학박사	
	정보통신전자공학과	공학석사		인공지능학과(통합)	공학박사	
	디지털미디어학과	공학석사		패션디자인학과(통합)	예술학박사	
	에너지환경공학과	공학석사				
	음악과	음악학석사				
	아동학과	이학석사				
	약학과	약학석사				
	인공지능학과	공학석사				
	패션디자인학과	예술학석사				
협동과정 (학과간)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중독학과	중독학석사		중독학과(통합)	중독학박사	
	의료인공지능학과	공학석사		의료인공지능학과(통합)	공학박사	
	공연예술문화학과	예술학석사		공연예술문화학과(통합)	예술학박사, 음악학박사	
	예술미디어융합학과	예술학석사		예술미디어융합학과(통합)	예술학박사	
		음악학석사			음악학박사	
성의	의학교육학과	의학교육학석사	126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157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의학과	의학석사		의학과(통합)	의학박사	
	의과학과	이학석사		의과학과(통합)	이학박사	
협동과정 (학과간)	정밀의료 빅데이터학과	의학석사, 이학석사		융복합의과학과	이학박사	
				생명윤리학과	생명윤리학 박사	
총계	44개 학과		311	39개 학과		270

※ 「(통합)」은 석·박사 통합과정을 두고 있는 학과임.

[별표 2] <개정 2012.5.3., 2012.11.28., 2014.3.1., 2015.3.1., 2014.11.22, 2016.10.7., 2017.1.25., 2017.9.22, 2017.11.22, 2018.1.8., 2018.4.28., 2018.12.9, 2019.1.13., 2020.3.1., 2020.5.12, 2021.7.30., 2022.1.15., 2022.9.2, 2023.10.05., 2024.7.14., 2024.10.2>

2017학년도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전공	학위종별	입학 정원
보건대학원	산업 및 환경보건학전공 인간공학 및 재활보건학전공 산업 및 지역사회간호학전공 건강증진학전공 보건정보학전공 역학 및 임상시험학전공 보건정책 및 관리학전공 국제보건학전공	보건학석사(산업 및 환경보건학) 보건학석사(인간공학 및 재활보건학) 보건학석사(산업 및 지역사회간호학) 보건학석사(건강증진학) 보건학석사(보건정보학) 보건학석사(역학 및 임상시험학) 보건학석사(보건정책 및 관리학) 보건학석사(국제보건학)	65
사회복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청소년복지학과 장애인복지학과 의료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 사회복지학석사(청소년복지) 사회복지학석사(장애인복지) 사회복지학석사(의료사회복지) 사회복지학석사(노인복지)	85
상담심리 대학원	상담학과 영성상담학과 아동상담학과 조직상담학과	상담심리학석사(상담) 상담심리학석사(영성상담) 상담심리학석사(아동상담) 상담심리학석사(조직상담)	80
의료경영 대학원	의료경영학전공	경영학석사(의료경영)	40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및 리더십전공 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독서교육전공 상담교육전공 직업특수교육전공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전공 평생교육전공	교육학석사(교육행정 및 리더십) 교육학석사(국어교육) 교육학석사(영어교육) 교육학석사(수학교육) 교육학석사(특수교육) 교육학석사(유아교육) 교육학석사(독서교육) 교육학석사(상담교육) 교육학석사(직업특수교육) 교육학석사(외국인을위한한국어교육) 교육학석사(평생교육)	102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특별과정)
	학과·전공	학위종별	입학 정원	
임상치과학 대학원	보존보철학과 치과임프란트학과 치과교정학과 구강악안면외과학과	치의학석사(보존보철학) 치의학석사(치과임프란트학) 치의학석사(치과교정학) 치의학석사(구강악안면외과학)	20	
임상간호 대학원	가정간호전공 노인간호전공 응급간호전공 정신간호전공 종양간호전공 감염관리간호전공 호스피스간호전공	간호학석사(가정간호) 간호학석사(노인간호) 간호학석사(응급간호) 간호학석사(정신간호) 간호학석사(종양간호) 간호학석사(감염관리간호) 간호학석사(호스피스간호)	40	
문화영성 대학원	문화영성학과 문화영성전공	문화영성학석사(문화영성)	25	
교회음악 대학원	교회음악과 오르간전공 작곡전공 합창지휘전공	교회음악석사(오르간) 교회음악석사(작곡) 교회음악석사(합창지휘)	15	
생명 대학원	생명윤리학전공 생명문화학전공 임상연구윤리학전공	생명윤리학석사(생명윤리) 생명문화학석사(생명문화) 생명윤리학석사(임상연구윤리)	25	
글로벌융합 대학원	경영학과 행정학과 일반행정 및 지방자치전공 의료 및 보건행정전공 글로벌한류비즈니스학과	경영학석사(경영학) 행정학석사(행정학) 한류 MBA	58	최고경영자과정 글로벌한류 비즈니스 전문가과정
교회법 대학원	교회법학과	교회법석사	12	
계	12개 대학원		567	

2018학년도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전공	학위종별	입학 정원
보건대학원	산업 및 환경보건학전공 인간공학 및 재활보건학전공 산업 및 지역사회간호학전공 건강증진학전공 보건정보학전공 역학 및 임상시험학전공 보건정책 및 관리학전공 국제보건학전공	보건학석사(산업 및 환경보건학) 보건학석사(인간공학 및 재활보건학) 보건학석사(산업 및 지역사회간호학) 보건학석사(건강증진학) 보건학석사(보건정보학) 보건학석사(역학 및 임상시험학) 보건학석사(보건정책 및 관리학) 보건학석사(국제보건학)	65
사회복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의료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정신건강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 사회복지학석사(의료사회복지) 사회복지학석사(노인복지) 사회복지학석사(정신건강복지)	75
상담심리 대학원	상담학과 영성상담학과 아동상담학과 조직상담학과	상담심리학석사(상담) 상담심리학석사(영성상담) 상담심리학석사(아동상담) 상담심리학석사(조직상담)	80
의료경영 대학원	의료경영학전공	경영학석사(의료경영)	40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및 리더십전공 국어교육전공 주니어영어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독서교육전공 상담교육전공 직업특수교육전공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전공 평생교육전공 진로진학상담전공	교육학석사(교육행정 및 리더십) 교육학석사(국어교육) 교육학석사(영어교육) 교육학석사(수학교육) 교육학석사(특수교육) 교육학석사(유아교육) 교육학석사(독서교육) 교육학석사(상담교육) 교육학석사(직업특수교육) 교육학석사(외국인을위한한국어교육) 교육학석사(평생교육) 교육학석사(진로진학상담)	102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특별과정)
	학과·전공	학위종별	입학 정원	
임상치과학 대학원	보존보철학과 치과임프란트학과 치과교정학과 구강악안면외과학과	치의학석사(보존보철학) 치의학석사(치과임프란트학) 치의학석사(치과교정학) 치의학석사(구강악안면외과학)	20	
임상간호 대학원	가정간호전공 노인간호전공 응급간호전공 정신간호전공 종양간호전공 감염관리간호전공 호스피스간호전공	간호학석사(가정간호) 간호학석사(노인간호) 간호학석사(응급간호) 간호학석사(정신간호) 간호학석사(종양간호) 간호학석사(감염관리간호) 간호학석사(호스피스간호)	40	
문화영성 대학원	문화영성학과 문화영성전공	문화영성학석사(문화영성)	25	
교회음악 대학원	교회음악과 오르간전공 작곡전공 합창지휘전공	교회음악석사(오르간) 교회음악석사(작곡) 교회음악석사(합창지휘)	15	
생명 대학원	생명윤리학전공 생명문화학전공 임상연구윤리학전공	생명윤리학석사(생명윤리) 생명문화학석사(생명문화) 생명윤리학석사(임상연구윤리)	25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경영학)	28	최고경영자과정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일반행정 및 지방자치전공 의료 및 보건행정전공	행정학석사(행정학)	30	
교회법 대학원	교회법학과	교회법석사	12	
계	13개 대학원		557	

2019학년도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전공	학위종별	입학 정원
보건대학원	산업 및 환경보건학전공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학전공 산업 및 지역사회간호학전공 건강증진학전공 보건정보학전공 역학 및 임상시험학전공 보건정책 및 관리학전공 국제보건학전공	보건학석사(산업 및 환경보건학) 보건학석사(물리치료 및 작업치료학) 보건학석사(산업 및 지역사회간호학) 보건학석사(건강증진학) 보건학석사(보건정보학) 보건학석사(역학 및 임상시험학) 보건학석사(보건정책 및 관리학) 보건학석사(국제보건학)	65
사회복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의료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정신건강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 사회복지학석사(의료사회복지) 사회복지학석사(노인복지) 사회복지학석사(정신건강복지)	75
상담심리 대학원	상담학과 영성상담학과 아동상담학과 조직상담학과	상담심리학석사(상담) 상담심리학석사(영성상담) 상담심리학석사(아동상담) 상담심리학석사(조직상담)	80
의료경영 대학원	의료경영학전공	경영학석사(의료경영)	40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및 리더십전공 주니어영어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독서교육전공 상담교육전공 직업특수교육전공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전공 평생교육전공 진로진학상담전공	교육학석사(교육행정 및 리더십) 교육학석사(영어교육) 교육학석사(특수교육) 교육학석사(유아교육) 교육학석사(독서교육) 교육학석사(상담교육) 교육학석사(직업특수교육) 교육학석사(외국인을위한한국어교육) 교육학석사(평생교육) 교육학석사(진로진학상담)	102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특별과정)
	학과·전공	학위종별	입학 정원	
임상치과학 대학원	보존보철학과 치과임프란트학과 치과교정학과 구강악안면외과학과	치의학석사(보존보철학) 치의학석사(치과임프란트학) 치의학석사(치과교정학) 치의학석사(구강악안면외과학)	20	
임상간호 대학원	가정간호전공 노인간호전공 응급간호전공 정신간호전공 종양간호전공 감염관리간호전공 호스피스간호전공	간호학석사(가정간호) 간호학석사(노인간호) 간호학석사(응급간호) 간호학석사(정신간호) 간호학석사(종양간호) 간호학석사(감염관리간호) 간호학석사(호스피스간호)	45	
문화영성 대학원	문화영성학과 문화영성전공	문화영성학석사(문화영성)	25	
교회음악 대학원	교회음악과 오르간전공 작곡전공 합창지휘전공	교회음악석사(오르간) 교회음악석사(작곡) 교회음악석사(합창지휘)	15	
생명 대학원	생명윤리학전공 생명문화학전공 임상연구윤리학전공	생명윤리학석사(생명윤리) 생명문화학석사(생명문화) 생명윤리학석사(임상연구윤리)	25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경영학)	28	최고경영자과정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일반행정 및 지방자치전공 의료 및 보건행정전공	행정학석사(행정학)	30	
교회법 대학원	교회법학과	교회법석사	12	
계	13개 대학원		562	

2020학년도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전공	학위종별	입학 정원
보건대학원	산업 및 환경보건학전공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학전공 산업 및 지역사회간호학전공 건강증진학전공 보건정보학전공 역학 및 임상시험학전공 보건정책 및 관리학전공 국제보건학전공	보건학석사(산업 및 환경보건학) 보건학석사(물리치료 및 작업치료학) 보건학석사(산업 및 지역사회간호학) 보건학석사(건강증진학) 보건학석사(보건정보학) 보건학석사(역학 및 임상시험학) 보건학석사(보건정책 및 관리학) 보건학석사(국제보건학)	65
사회복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의료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정신건강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 사회복지학석사(의료사회복지) 사회복지학석사(노인복지) 사회복지학석사(정신건강복지)	78
상담심리 대학원	상담학과 영성상담학과 아동상담학과 조직상담학과	상담심리학석사(상담) 상담심리학석사(영성상담) 상담심리학석사(아동상담) 상담심리학석사(조직상담)	90
의료경영 대학원	의료경영학전공	경영학석사(의료경영)	40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독서교육전공 상담교육전공 직업특수교육전공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전공 평생교육전공 진로진학상담전공	교육학석사(특수교육) 교육학석사(유아교육) 교육학석사(독서교육) 교육학석사(상담교육) 교육학석사(직업특수교육) 교육학석사(외국인을위한한국어교육) 교육학석사(평생교육) 교육학석사(진로진학상담)	102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특별과정)
	학과·전공	학위종별	입학 정원	
임상치과학 대학원	보존보철학과 치과임프란트학과 치과교정학과 구강악안면외과학과	치의학석사(보존보철학) 치의학석사(치과임프란트학) 치의학석사(치과교정학) 치의학석사(구강악안면외과학)	20	
임상간호 대학원	가정간호전공 노인간호전공 응급간호전공 정신간호전공 종양간호전공 감염관리간호전공 호스피스간호전공	간호학석사(가정간호) 간호학석사(노인간호) 간호학석사(응급간호) 간호학석사(정신간호) 간호학석사(종양간호) 간호학석사(감염관리간호) 간호학석사(호스피스간호)	45	
문화영성 대학원	문화영성학과 문화영성전공 사목영성전공	문화영성학석사(문화영성)	25	
교회음악 대학원	교회음악과 오르간전공 작곡전공 합창지휘전공	교회음악석사(오르간) 교회음악석사(작곡) 교회음악석사(합창지휘)	15	
생명 대학원	생명윤리학전공 생명문화학전공 임상연구윤리학전공	생명윤리학석사(생명윤리) 생명문화학석사(생명문화) 생명윤리학석사(임상연구윤리)	25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경영학)	15	최고경영자과정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일반행정 및 지방자치전공 의료 및 보건행정전공 탐정학전공	행정학석사(행정학)	30	
교회법 대학원	교회법학과	교회법석사	12	
계	13개 대학원		562	

2021학년도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전공	학위종별	입학 정원
보건대학원	산업 및 환경보건학전공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학전공 산업 및 지역사회간호학전공 건강증진학전공 보건정보학전공 역학 및 임상시험학전공 보건정책 및 관리학전공 국제보건학전공	보건학석사(산업 및 환경보건학) 보건학석사(물리치료 및 작업치료학) 보건학석사(산업 및 지역사회간호학) 보건학석사(건강증진학) 보건학석사(보건정보학) 보건학석사(역학 및 임상시험학) 보건학석사(보건정책 및 관리학) 보건학석사(국제보건학)	65
사회복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의료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정신건강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 사회복지학석사(의료사회복지) 사회복지학석사(노인복지) 사회복지학석사(정신건강복지)	80
상담심리 대학원	상담학과 영성상담학과 아동상담학과 조직상담학과	상담심리학석사(상담) 상담심리학석사(영성상담) 상담심리학석사(아동상담) 상담심리학석사(조직상담)	90
의료경영 대학원	의료경영학전공	경영학석사(의료경영)	40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독서교육전공 상담교육전공 직업특수교육전공 한국어교육전공 평생교육전공 진로진학상담전공	교육학석사(특수교육) 교육학석사(유아교육) 교육학석사(독서교육) 교육학석사(상담교육) 교육학석사(직업특수교육) 교육학석사(한국어교육) 교육학석사(평생교육) 교육학석사(진로진학상담)	102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특별과정)
	학과·전공	학위종별	입학 정원	
임상치과학 대학원	보존보철학과 치과임프란트학과 치과교정학과 구강악안면외과학과	치의학석사(보존보철학) 치의학석사(치과임프란트학) 치의학석사(치과교정학) 치의학석사(구강악안면외과학)	20	
임상간호 대학원	가정간호전공 노인간호전공 응급간호전공 정신간호전공 종양간호전공 감염관리간호전공 호스피스간호전공	간호학석사(가정간호) 간호학석사(노인간호) 간호학석사(응급간호) 간호학석사(정신간호) 간호학석사(종양간호) 간호학석사(감염관리간호) 간호학석사(호스피스간호)	45	
문화영성 대학원	문화영성학과 문화영성전공 사목영성전공	문화영성학석사(문화영성)	25	
교회음악 대학원	교회음악과 오르간전공 작곡전공 합창지휘전공	교회음악석사(오르간) 교회음악석사(작곡) 교회음악석사(합창지휘)	15	
생명 대학원	생명윤리학전공 생명문화학전공 임상연구윤리학전공	생명윤리학석사(생명윤리) 생명문화학석사(생명문화) 생명윤리학석사(임상연구윤리)	25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경영학)	-	최고경영자과정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일반행정 및 지방자치전공 의료 및 보건행정전공 탐정학전공	행정학석사(행정학)	43	
교회법 대학원	교회법학과	교회법석사	12	
계	13개 대학원		562	

2022학년도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2022학년도 후기부터 적용)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전공	학위종별	입학정원
보건대학원	산업 및 환경보건학전공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학전공 산업 및 지역사회간호학전공 건강증진학전공 보건정보학전공 역학 및 임상시험학전공 보건정책 및 관리학전공 국제보건학전공	보건학석사(산업 및 환경보건학) 보건학석사(물리치료 및 작업치료학) 보건학석사(산업 및 지역사회간호학) 보건학석사(건강증진학) 보건학석사(보건정보학) 보건학석사(역학 및 임상시험학) 보건학석사(보건정책 및 관리학) 보건학석사(국제보건학)	0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의료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정신건강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 사회복지학석사(의료사회복지) 사회복지학석사(노인복지) 사회복지학석사(정신건강복지)	80
상담심리대학원	상담학과 영성상담학과 아동상담학과 조직상담학과	상담심리학석사(상담) 상담심리학석사(영성상담) 상담심리학석사(아동상담) 상담심리학석사(조직상담)	90
의료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전공	경영학석사(의료경영)	0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독서교육전공 상담교육전공 직업특수교육전공 한국어교육전공 평생교육전공 진로진학상담전공	교육학석사(특수교육) 교육학석사(유아교육) 교육학석사(독서교육) 교육학석사(상담교육) 교육학석사(직업특수교육) 교육학석사(한국어교육) 교육학석사(평생교육) 교육학석사(진로진학상담)	102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산업 및 환경보건전공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전공 산업 및 지역사회간호전공 건강증진전공 보건정보전공 역학 및 임상시험전공 보건정책전공 국제보건 및 통일보건의료전공 의료경영전공 의료기술경영전공	보건학석사(산업 및 환경보건) 보건학석사(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보건학석사(산업 및 지역사회간호) 보건학석사(건강증진) 보건학석사(보건정보) 보건학석사(역학 및 임상시험) 보건학석사(보건정책) 보건학석사(국제보건 및 통일보건의료) 경영학석사(의료경영) 경영학석사(의료기술경영)	105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특별과정)
	학과 · 전공	학위종별	입학 정원	
임상치과학 대학원	보존보철학과 치과임프란트학과 치과교정학과 구강악안면외과학과	치의학석사(보존보철학) 치의학석사(치과임프란트학) 치의학석사(치과교정학) 치의학석사(구강악안면외과학)	20	
임상간호 대학원	가정간호전공 노인간호전공 응급간호전공 정신간호전공 종양간호전공 감염관리간호전공 호스피스간호전공	간호학석사(가정간호) 간호학석사(노인간호) 간호학석사(응급간호) 간호학석사(정신간호) 간호학석사(종양간호) 간호학석사(감염관리간호) 간호학석사(호스피스간호)	45	
문화영성 대학원	문화영성학과 문화영성전공 사목영성전공	문화영성학석사(문화영성)	20	
교회음악 대학원	교회음악과 오르간전공 작곡전공 합창지휘전공	교회음악석사(오르간) 교회음악석사(작곡) 교회음악석사(합창지휘)	15	
생명 대학원	생명윤리학전공 생명문화학전공 임상연구윤리학전공	생명윤리학석사(생명윤리) 생명문화학석사(생명문화) 생명윤리학석사(임상연구윤리)	25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영전공 문화예술경영전공	경영학석사(경영학)	10	최고경영자과정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일반행정 및 지방자치전공 의료 및 보건행정전공 탐정학전공	행정학석사(행정학)	38	
교회법 대학원	교회법학과	교회법석사	12	
계	14개 대학원		562	

2023학년도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전공	학위종별	입학정원
보건대학원	산업 및 환경보건학전공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학전공 산업 및 지역사회간호학전공 건강증진학전공 보건정보학전공 역학 및 임상시험학전공 보건정책 및 관리학전공 국제보건학전공	보건학석사(산업 및 환경보건학) 보건학석사(물리치료 및 작업치료학) 보건학석사(산업 및 지역사회간호학) 보건학석사(건강증진학) 보건학석사(보건정보학) 보건학석사(역학 및 임상시험학) 보건학석사(보건정책 및 관리학) 보건학석사(국제보건학)	0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의료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정신건강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 사회복지학석사(의료사회복지) 사회복지학석사(노인복지) 사회복지학석사(정신건강복지)	75
상담심리대학원	상담학과 영성상담학과 아동상담학과 조직상담학과	상담심리학석사(상담) 상담심리학석사(영성상담) 상담심리학석사(아동상담) 상담심리학석사(조직상담)	90
의료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전공	경영학석사(의료경영)	0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독서교육전공 상담교육전공 직업특수교육전공 한국어교육전공 평생교육전공 진로진학상담전공	교육학석사(특수교육) 교육학석사(유아교육) 교육학석사(독서교육) 교육학석사(상담교육) 교육학석사(직업특수교육) 교육학석사(한국어교육) 교육학석사(평생교육) 교육학석사(진로진학상담)	102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산업 및 환경보건전공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전공 산업 및 지역사회간호전공 건강증진전공 보건정보전공 역학 및 임상시험전공 보건정책전공 국제보건 및 통일보건의료전공 의료경영전공 의료기술경영전공	보건학석사(산업 및 환경보건) 보건학석사(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보건학석사(산업 및 지역사회간호) 보건학석사(건강증진) 보건학석사(보건정보) 보건학석사(역학 및 임상시험) 보건학석사(보건정책) 보건학석사(국제보건 및 통일보건의료) 경영학석사(의료경영) 경영학석사(의료기술경영)	105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특별과정)
	학과 · 전공	학위종별	입학 정원	
임상치과학 대학원	보존보철학과 치과임프란트학과 치과교정학과 구강악안면외과학과	치의학석사(보존보철학) 치의학석사(치과임프란트학) 치의학석사(치과교정학) 치의학석사(구강악안면외과학)	20	
임상간호 대학원	가정간호전공 노인간호전공 응급간호전공 정신간호전공 종양간호전공 감염관리간호전공 호스피스간호전공	간호학석사(가정간호) 간호학석사(노인간호) 간호학석사(응급간호) 간호학석사(정신간호) 간호학석사(종양간호) 간호학석사(감염관리간호) 간호학석사(호스피스간호)	45	
문화영성 대학원	문화영성학과 문화영성전공 사목영성전공	문화영성학석사(문화영성)	15	
교회음악 대학원	교회음악과 오르간전공 작곡전공 합창지휘전공	교회음악석사(오르간) 교회음악석사(작곡) 교회음악석사(합창지휘)	15	
생명 대학원	생명윤리학전공 생명문화학전공 임상연구윤리학전공	생명윤리학석사(생명윤리) 생명문화학석사(생명문화) 생명윤리학석사(임상연구윤리)	25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영전공 문화예술경영전공	경영학석사(경영학)	10	최고경영자과정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일반행정 및 지방자치전공 의료 및 보건행정전공 탐정학전공	행정학석사(행정학)	35	
글로벌지식 경영대학원	경영회계금융학과	경영학석사(경영회계금융학)	13	
교회법 대학원	교회법학과	교회법석사	12	
계	15개 대학원		562	

2024학년도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전공	학위종별	입학정원
보건대학원	산업 및 환경보건학전공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학전공 산업 및 지역사회간호학전공 건강증진학전공 보건정보학전공 역학 및 임상시험학전공 보건정책 및 관리학전공 국제보건학전공	보건학석사(산업 및 환경보건학) 보건학석사(물리치료 및 작업치료학) 보건학석사(산업 및 지역사회간호학) 보건학석사(건강증진학) 보건학석사(보건정보학) 보건학석사(역학 및 임상시험학) 보건학석사(보건정책 및 관리학) 보건학석사(국제보건학)	0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의료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정신건강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 사회복지학석사(의료사회복지) 사회복지학석사(노인복지) 사회복지학석사(정신건강복지)	75
상담심리대학원	상담학과 영성상담학과 아동상담학과 조직상담학과	상담심리학석사(상담) 상담심리학석사(영성상담) 상담심리학석사(아동상담) 상담심리학석사(조직상담)	90
의료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전공	경영학석사(의료경영)	0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독서교육전공 상담교육전공 직업특수교육전공 한국어교육전공 평생교육전공 진로진학상담전공	교육학석사(특수교육) 교육학석사(유아교육) 교육학석사(독서교육) 교육학석사(상담교육) 교육학석사(직업특수교육) 교육학석사(한국어교육) 교육학석사(평생교육) 교육학석사(진로진학상담)	102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산업 및 환경보건전공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전공 산업 및 지역사회간호전공 건강증진전공 보건정보전공 역학 및 임상시험전공 보건정책전공 국제보건 및 통일보건의료전공 의료경영전공 의료기술경영전공	보건학석사(산업 및 환경보건) 보건학석사(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보건학석사(산업 및 지역사회간호) 보건학석사(건강증진) 보건학석사(보건정보) 보건학석사(역학 및 임상시험) 보건학석사(보건정책) 보건학석사(국제보건 및 통일보건의료) 경영학석사(의료경영) 경영학석사(의료기술경영)	105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특별과정)
	학과 · 전공	학위종별	입학 정원	
임상치과학 대학원	보존보철학과 치과임플란트학과 치과교정학과 구강악안면외과학과	치의학석사(보존보철학) 치의학석사(치과임플란트학) 치의학석사(치과교정학) 치의학석사(구강악안면외과학)	20	
임상간호 대학원	가정간호전공 종양간호전공 감염관리간호전공 호스피스간호전공	간호학석사(가정간호) 간호학석사(종양간호) 간호학석사(감염관리간호) 간호학석사(호스피스간호)	45	
문화영성 대학원	문화영성학과 문화영성전공 사목영성전공	문화영성학석사(문화영성)	15	
교회음악 대학원	교회음악과 오르간전공 작곡전공 합창지휘전공	교회음악석사(오르간) 교회음악석사(작곡) 교회음악석사(합창지휘)	15	
생명 대학원	생명윤리학전공 생명문화학전공 임상연구윤리학전공	생명윤리학석사(생명윤리) 생명문화학석사(생명문화) 생명윤리학석사(임상연구윤리)	25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영전공 문화예술경영전공	경영학석사(경영학)	10	최고경영자과정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일반행정 및 지방자치전공 의료 및 보건행정전공 탐정학전공	행정학석사(행정학)	35	
글로벌지식 경영대학원	경영회계금융학과	경영학석사(경영회계금융학)	13	
교회법 대학원	교회법학과	교회법석사	12	
계	15개 대학원		562	

[별표 3] <개정 2017.5.13., 삭제 2023.6.30.>

[별표 4] <신설 2011.3.1, 개정 2011.12.6., 2015.11.10., 2016.3.1., 삭제 2017.9.22>

2. 교회법대학원 학사시행세칙

교회법대학원 학사시행세칙

제정 2017. 3. 24

개정 2024. 5. 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회법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명칭)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명칭은 교회법대학원 제2과정이라 한다.

〈본조신설 2018.3.20.〉

제2장 입학

제2조(입학절차) 본 대학원의 입학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지원서류 제출
2. 서류심사
3. 구술심사(면접심사)
4. 합격자 발표
5. 입학등록

제3조(입학지원서류) 본 대학원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학업계획서(소정양식)
3.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기타 자격을 인정하는 서류
4.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5. 기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서류

제4조(입학지원자격) 본 대학원의 입학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가능하다.

1. 신학 학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 소속 교구장 또는 수도회 장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비신학 학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 본 대학원 제1과정(예비과정) 이수 후 소속 교구장 또는 수도회 장상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7.11.22., 2018.3.20.〉

제4조의 2(제1과정) ① 본 대학원 제1과정(예비과정)은 비학위과정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3.20.〉

- ② 비신학 학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 교구장 또는 수도회 장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과정(예비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③ 삭제 <2018.3.20.>

<본조신설 2017.11.22.>

제5조(입학전형)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심사로 이루어진다. 다만, 전형방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학사정)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열어 입학사정회를 갖는다.

제7조(합격통지서 발부) 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통지서를 발부한다.

제8조(재입학) ① 대학원 학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재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학원”을 해당학기 입학지원서 접수기간 중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재입학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재학생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재입학생의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은 신입학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재입학생의 제적 전 취득학점 인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3장 학적

제9조(학적 정의) ① 재학이라 함은 수료학점을 취득하기 전까지 매학기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강 신청한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는 자의 학적 상태를 말한다.

② 휴학이라 함은 수료학점을 취득하기 전까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학업을 일시 중단하는 자의 학적 상태를 말한다.

③ 제적이라 함은 재학 또는 휴학 상태인 자의 학적이 소멸된 상태를 말한다.

④ 수료라 함은 학위 취득 자격을 갖춘 자의 학적 상태를 말한다.

제10조(휴학) ① 대학원 학칙 제17조에 의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납입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학기 등록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휴학은 재학 중 2회에 한하며, 휴학기간은 1회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회수 및 기간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휴학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납입금 반환)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은 본교 “휴학·복학·제적규정”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자퇴)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퇴원이 수리된 자는 ‘자퇴로 인한 제적’ 처리를 한다.

제13조(수료) ① 수료자는 학위 취득 전까지 매학기 정해진 논문지도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료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위 취득을 포기한 자로 간주하여 수료 완료 처리한다.

1. 논문 학위취득예정자로서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논문 학위취득예정자로서 논문제출시한을 경과한 자

제4장 교과과정, 학점인정, 수강신청, 학점 및 성적

제1절 교과과정

제14조(교과과정 개편)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은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편성된 교과과정상의 교과목은 3년 이내에 개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편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7.11.22., 2018.3.20〉

제14조의 2 <제14조로 수정 통합 2018.3.20.>

제15조(학기별 교과목 개설) ① 학과장은 편성된 교과과정 중에서 다음 학기의 개설과목을 선정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개설과목을 선정하고 종합시간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기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교과목 담당교원) 본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외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교외의 박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 기타 사계의 권위자로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2절 학점인정

제17조(학점인정) ① 입학 전에 본교 또는 국내외의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20학점 이내에서 본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필수 외국어 과목을 해당 국가의 대학(원) 혹은 공인된 어학원에서 이수한 경우 최대 3과목의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11.22., 개정 2018.3.20>

② 제1항의 학점인정은 본 대학원의 해당 전공에서 설정한 교과목과 동일한 내용의 것으로서 그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신설 2017.11.22., 개정 2018.3.20>

③ 학점인정을 원하는 자는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1차 학기초 지정된 기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2., 2018.3.20>

④ 학점인정은 학과장이 인정하고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교과목에 한한다. <개정 2017.11.22., 2018.3.20>

제3절 수강신청 및 수업 출석

제18조(수강신청변경 및 취소) 수강신청·변경 및 취소는 당해년도 학사력상의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19조(수업 출석) 학생은 수강신청한 전과목의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각 과목별 결석일수가 전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시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제4절 학점 및 성적

제20조(학기당 취득학점) 학생은 한 학기에 20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학과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3학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수료 학점)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에서 지정한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최소한 88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2., 2018.3.20>

제22조(교과목 성적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기에 시행한 교과목 시험의 성적을 본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교과목 성적의 정정) ① 본 대학원에 제출한 교과목 성적에 정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이전까지 해당교수는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교과목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교과목 취득학점이 F인 경우 해당 교과목은 취득학점 및 평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장 종합시험

제1절 종합시험

제24조(시험범위 및 방법) 종합시험은 교회법전 전반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며,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제25조(응시자격)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5학기 이상 이수한 자 중에 79학점 이상을 평점평균 3.0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제26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은 매년 10월 중에 실시한다.

제2절 응시신청, 출제, 채점 및 합격기준

제27조(응시신청)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신청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출제의뢰) ① 대학원장은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을 학과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채점) 종합시험의 채점은 출제위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합격기준) 종합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31조(재시험) ① 종합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재시험에 응시하는 회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종합시험은 재학년간 내에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제6장 석사학위청구논문

제1절 논문지도교수

제32조(논문지도교수 위촉) 논문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제3차 학기 등록 시에 학과장이 제청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33조(논문지도교수 자격) 논문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3. 기타 교회법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개정 2024.5.25.>

제34조(논문지도교수 승인) 해당 학생은 제3차 학기 등록기간에 논문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논문지도교수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절 논문작성 및 제출

제36조(학위논문계획서)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79학점 이상을 취득한 후 논문 지도교수 지도 하에 학위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세부 승인 절차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7조(제출자격)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이어야 한다.

1.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학위논문계획서 심사에 통과한 자

제38조(제출절차)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은 논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정해진 기일 내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신청서 1부
2. 논문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석사학위 청구논문 원고 3부
4. 소정의 논문심사료

제39조(논문제출시한) 논문은 입학일로부터 6년 이내에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단,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40조(논문원고 제출) 석사학위논문의 원고는 11월중에 본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41조(논문의 체제와 규격) 석사학위논문의 체제와 규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체제”를 따르며,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2조(논문 중간발표) ① 대학원장은 논문제출 예정자에게 논문제출 학기의 중간에 중간발표를 명할 수 있다.
- ② 논문 중간발표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논문심사

- 제43조(논문심사위원의 구성)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 이외의 위원이 맡는다.
- 제44조(논문심사위원의 자격)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논문지도교수 자격에 준한다.
- 제45조(논문심사 및 결과보고) ① 논문심사는 논문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로 한다.
- ②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한다.
- 제46조(심사보고) ① 심사위원은 “심사결과표”에 심사결과를 기재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후에 심사위원의 “심사결과표”와 심사내용의 종합결과를 기재한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서”를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7조(논문 사정기준) 논문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심사위원 전원의 심사결과 평균이 80점 이상의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7장 학위 수여

- 제48조(학위 및 이수증 수여) ①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 ② 공동 학위에 관한 사항은 협정교와의 협의에 따르며 별도의 공동 학위기를 수여한다.

제8장 공개강좌

- 제49조(개설) 대학원 학칙 제37조에 의거하여 본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제50조(등록) ① 공개강좌의 입학자격, 개설과목 또는 제목, 수업, 수강인원, 수업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 ② 공개강좌 및 연수과정의 수업료는 수강생으로부터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제51조(수료) 공개강좌의 수강생이 전 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9장 장학금 및 징계

제52조(장학금) 본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본 대학원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53조(징계)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10장 직제 및 교회법대학원운영위원회

제54조(조직) 본 대학원에 원장을 두며 교학부장, 학과장 및 사무를 수행할 약간 명의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5조(학과장) 학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본 대학원의 전공부분 학사에 관한 다음 직무를 담당한다.

1. 학사지도
2. 개설과목 및 담당교수, 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 제청
3.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기타사항

제56조(대학원운영위원회) ① 본 대학원에 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 대학발전추진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31.>

제5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입학, 제적, 자퇴 및 수료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 분야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 및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본 대학원 또는 위원회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58조(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세칙(제4조, 제4조의 2, 제14조, 제14조의 2, 제17조, 제21조)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1조의 2, 제4조, 제4조의 2, 제14조, 제14조의 2, 제17조, 제21조)은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56조)은 202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33조 3호)는 2024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교회법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심사에 합격하여 교회법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20 년 월 일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장 ○○박사 ○ ○ ○

위의 증명에 의하여 교회법석사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가톨릭대학교 총장 ○○박사 ○ ○ ○

가톨릭대학교

학위번호 :

3. 교회법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교회법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제정 2017. 03. 24

개정 2020. 03. 0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운영과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의 지급은 교외 인사, 기관, 단체에서 따로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사무관장) 본 장학업무의 사무관장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처장은 장학기금 조성 및 예산배정을 담당한다.
2. 사무처장은 장학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한다.
3. 교회법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그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장학위원회 구성) 본 대학원 장학금 지급 정책에 관한 심의 기관으로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은 본 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은 본 대학원장으로 한다.

제5조(장학위원회 기능) 장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학금의 정책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장학생의 선발, 수혜기간, 지급액의 심의 결정
3. 장학금 지급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장학금의 종류와 자격) 본 대학원의 장학금 종류와 자격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신청방법) ① 장학금 신청자는 매 학기 공고된 기일 내에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본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형식으로 장학금을 수혜 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8조(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수혜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한다.

1. 휴학자 및 학칙 위배자
2. 성적 불량자(평균평점 3.00 미만)
3.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인정된 자

제9조(장학생의 확정) 장학생의 확정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확정한다.

제10조(지급시기 및 방법) 장학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1조(장학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한다.

1. 본 규정 제8조 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제적자 및 퇴학자

제12조(시행세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가 심의하고 본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17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학금의 종류와 자격

장학금 종류	지급액	대상자
기쁨장학금	당해학기 수업료의 50%	가톨릭 성직자 및 수도자
희망장학금	당해학기 수업료의 50%	상기 외 가톨릭신자

* 상기 지급액은 상한선이며, 대학원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장학금 중복 수혜 시, 한 학기 장학금의 합계액은 수업료 총액을 넘을 수 없다.

* 각 장학금은 수업연한에 한하여 적용된다.

III. 학사관리

- 1. 학기별 주요 학사제도 안내**
- 2. 교회법대학원 교과과정 기본이수학점**
- 3. 종합시험 & 석사학위청구논문**
- 4. 수강신청**
- 5. 등록금 반환**
- 6. 장학금 제도**
- 7. 학교생활 안내**

1. 학기별 주요 학사제도 안내

(1) 제1과정(예비과정)

학기	이수학점	주요 학사제도
1차	17	입학
2차	17	-
3차	16	-
4차	18	-

(2) 제2과정(석사과정)

학기	이수학점	주요 학사제도	
1차	17	입학	
2차	17	-	
3차	16	석사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 승인/변경 신청서 제출	
4차	18	석사학위청구논문 논문지도비 납부	
5차	13	석사학위청구논문 계획서	석사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 승인/변경 신청서 제출
			석사학위청구논문 계획서 제출
			석사학위청구논문 계획서 심사
6차	7	종합시험	종합시험 응시신청서 제출
			필기시험(3과목), 구술시험(7과목) ※ 80점 이상 합격
		석사학위청구논문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및 원고 제출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
			석사학위청구논문 인준본(하드본) 제출

2. 교회법대학원 교과과정 주요 이수학점

구분	이수학점
제1과정(예비과정)	62
제2과정(석사과정)	88

3. 종합시험

구분	내용
응시자격	5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79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시험범위	교회법대학원 교과목 전반
시험방법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
시험시기	매년 10월 중
신청방법	종합시험 응시신청서 제출
합격기준	80점 이상(100점 만점)
재시험	재시험 응시 횟수 제한 없으나 재학년한 내에 모두 합격하여야함

4. 석사학위청구논문

(1) 석사학위논문지도교수 승인

- 3차 학기 등록기간에 논문 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논문 지도교수 변경: 논문 지도교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4차 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논문지도비 포함 납부해야 함

(2) 석사학위청구논문 계획서

- (1) 제출자격: 79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2) 논문지도교수 지도 하에 석사학위청구논문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3) 석사학위청구논문

(1) 제출자격: 하단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①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②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③ 석사학위청구논문 계획서 심사에 통과한 자

(2)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할 제반 서류

- ① 논문심사비 납부(범용수납)
- ② 석사학위청구논문 원고 3부
- ③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1부

(3) 논문 제출시한: 입학일로부터 6년 이내

(4) 논문원고는 11월 중에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

5. 수강신청

(1) 학기당 이수학점

- ① 한 학기당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② 단, 대학원장의 추천의 승인을 받은 경우 3학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음

(2) 학점 인정

- ① 예비과정의 경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산하 '가톨릭교리신학원' 혹은 수도자장상연합회 산하 '수도자신학원' 또는 각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설립된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과목들에 대해서는 본 대학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함
- ② 석사과정의 경우, 본교 또는 국내외의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20학점 이내에 본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③ 필수 외국어 과목을 해당 국가의 대학이나 대학원 혹은 공인된 어학원에서 이수한 경우 최대 3과목의 수강을 면제할 수 있음

(3) 수강신청

- ① 가톨릭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 트리니티 클릭 → 대학원 수업 → 수강신청 → 수강신청 완료 후 저장

6. 등록금 반환

반환사유 규정	반환금액
학사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반환
학사 개시일(입학금)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사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사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사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7. 등록금 및 장학금 제도

(1) 등록금

등록금	2025학년도 기준	학비감면		실 납입금
입학금	1,096,000원			1,096,000원
수업료 (1개 학기 기준)	6,882,000원	성직자/수도자	50%	3,441,000원
		가톨릭 신자	50%	3,441,000원

(2) 장학금

장학금 종류	지급액	대상자	수혜기간
기쁨장학금	수업료의 50% 감면	가톨릭 성직자 및 수도자	해당 학기
희망장학금	수업료의 50% 감면	상기 외 가톨릭 신자	

8. 학교생활 안내

(1) 교회법대학원 교학부장 실

성 명	전화번호	위치
Fr. 지용식	02-2164-4820/010-8692-5695	K322

(2) 교회법대학원교학팀

담당자 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FAX	근무시간	위치
김나연	02-2164-6521	cukgscl@catholic.ac.kr	02-2164-4977	월 ~ 금 08:30 ~ 17:30	K338

(3) 등록

본 등록기간		추가 등록기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2월 둘째~셋째 주	8월 셋째 주	3월 둘째 주	9월 둘째주

- ① 등록기간은 매 학년도 학사력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② 등록은 본 등록기간 및 추가등록기간에만 가능
- ③ 등록기간 및 등록 방법 안내는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개별 메일 안내 함

(4) 휴학 및 복학

- ① 휴학: 휴학은 재학기간 중 총 2회까지 가능하며, 1회 휴학 시 1년까지 가능함
※ 단, 부득이한 이유로 횟수를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학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음
- ② 신청방법: 교회법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개별 메일 확인 → 교학팀의 안내에 따라 양식(휴학원 또는 복학원)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 도서대출 확인(휴학원에 한함) → 교회법대학원에 제출[우편 또는 팩스(02-2164-4977)]으로도 제출 가능

(5) 다기능카드(학생증) 발급

- ① 교회법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반명함 사진 지참
- ② 교내 신분증 및 도서관 출입 용도로 활용
- ※ 재발급 시, 교회법대학원교학팀 사무실 방문(사진 지참)

(6) 부속병원 이용

- ① 부속병원: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
- ② 할인비율: 대전성모병원 제외 초진,재진료 100%,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 감면
- ③ 감면대상: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생, 수료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
- ④ 할인방법: 각 병원에 감면번호 또는 감면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
- ⑤ 감면번호 발급 방법: 트리니티 로그인 → 학사정보 → 학적/졸업 → 학적조회 → 감면번호

(7) 도서관 이용

- ① 이용 시간

구분	학기 중		방학 중		비고
	평일	토요일	평일	토요일	
자료실/대출실	09:00 ~21:00	09:00 ~13:00	09:00 ~17:00	휴실	공휴일 휴실
제1자유열람실	09:00 ~ 23:00				2층(연중 무휴)
제2자유열람실	23:00 ~ (익일) 06:00				5층(연중 무휴)

② 주요 문의 안내 (※ 내선번호: 02-2164-xxxx)

대출/반납	4606	우선정리요청	4604	원문복사/상호대차서비스	4267
희망도서신청	4603	학술 DB	4267	교육/연구지원	4610

③ 대출반납 안내

학적상태	도서	비도서(CD,DVD)	연장 및 연체 안내
대학원 재학생, 수료생	30권 30일	5권 대출권수에 합산	연장 신청 가능(2회) 연체료 100원/일/권 장기연체시 대출 정지
휴학생	3권 30일		
졸업생(특별ID)	10권 14일		

가. 도서 예약: 대출중인 자료를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여 우선 대출을 받는 서비스

나. 타교정 자료 대출

- 본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가 타 교정(성신, 성의) 있는 경우,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 5권 14일, 연장 불가(신청일로부터 도착 1~2일 소요)

④ 학술정보 이용교육

- 대학원생을 위하여 논문작성에 필요한 학술정보 이용 교육을 제공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학술연구지원 → 학술정보 이용교육

⑤ 야간대출 예약제

가. 예약신청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 검색 후, 상세정보 화면에서 해당도서 우측의 [야간대출] 클릭
- 평일 16시까지 접수된 신청 건만 대출 가능(이후 신청 건은 취소됨)

나. 처리상태 조회: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My Library → 이용현황 → 야간대출예약

다. 수령 방법: 폐관 이후 ~ 다음날 개관 이전까지 중앙도서관 정문 출입구 수령

라. 예약 취소

- 16시 이전까지만 취소 가능
- 16시 이후 신청 건 또는 대출 불가 건은 관리자가 취소 처리함

마. 제재조치: 미수령 시 도서는 반납처리되며, 1차 주의 및 경고, 2차 3개월, 3차 이상 1년간 정지

⑥ 모바일 열람증

가. 발급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가톨릭 모바일 열람증> 다운로드

나. 이용안내

- 학번, 사번, 특별열람ID와 핸드폰 번호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 어플 실행 시에만 이용 가능

※ 관련 문의: 중앙도서관 대출실(02-2164-4606)

(8) 교회법연구소

담당자 명	전화번호	위치
김나연	02-2164-6521	K305

(9) 교회법대학원 원우회실

담당자 명	전화번호	위치
김나연	02-2164-6521	K334

(10) 기타 후생시설

구분	위치	편의 시설명	이용시간	전화
김수환관(K관)	1층 내부	피트니스 센터	07:00 ~ 22:30	032-342-5406
		편의점 이마트24	24시간	-
		폴바셋	08:00 ~ 16:00	-
	1층 외부	포케암	10:00 ~ 19:30	-
		맘스터치	09:00 ~ 21:00	032-345-8892
		세탁소	09:30 ~ 19:00	-
		빵집	10:00 ~ 17:00	-
		우리은행	09:00 ~ 16:00	032-342-2641
		교내복사실	09:00 ~ 19:00	032-342-4135
니콜스관(N관)	4층	카페 하랑	09:00 ~ 18:00	02-2164-4682
비르투스관(V관)	1층	보건실	09:00 ~ 18:00	02-2164-4126
학생미래인재관 (B관)	1층	교직원 식당	중식 11:30 ~ 14:00 석식 17:30 ~ 19:00	02-2164-4729
		편의점 CU	24시간	032-345-9081
		학생 식당	10:00 ~ 19:00	02-2164-4736
	2층	폴바셋	08:00 ~ 16:00	-
중앙도서관	2층	카페드림	08:00 ~ 18:00	-

※ 이용시간은 학기 중 평일 기준이며,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11) 주차장 안내

① 정기관

대상	이용요금	비고
교직원, 학생(학부, 대학원생)	10,000원/월 50,000원/학기 100,000원/년	비정기관: 2,000원/일
시간강사	10,000원/월 25,000원/학기	
임대매장, 출입업체 시설	20,000원 / 월 100,000원 / 학기 200,000원 / 년	비정기관 2H 미만 : 1,000원 2H 이상 ~ 4H 미만 : 2,000원 4H 이상 ~ 8H 미만 : 4,000원 8H 이상 : 10,000원

※ 정기권 발급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서 1부(주차관리실 구비), 차량등록증 사본 1부(타인 차량일 경우 관계증명서류 1부 첨부)
- 장애인등록증 제출 시, 정기권 이용요금 면제(교직원 및 학생 본인에 한함)
- 정기권 구입 연 단위 결제 시 10% 할인

② 할인권

대상	이용요금	비고
평생교육원, 취업지원팀, 국제교류팀, 학생생활상담소	1,000원 / 일	할인권 구입 (주차관리실)
입학처	2,000원 / 일	
학회, 세미나, 행사, 웨딩하객	2H 미만 : 1,000원 2H 이상~ 4H 미만 : 2,000원 4H 이상~ 8H 미만 : 4,000원 8H 이상 : 10,000원	

③ 일반권

대상	이용요금	비고
일반차량	10분당 500원	10분 이내 출차 시 무료

※ 관련 문의: 주차관리실(K102호 / K관 1층 안내데스크 옆), 02- 2164-4632

(12) 증명서 발급

- ① 발급 증명: 재학, 성적, 휴학, 제적,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장학금 수혜, 사회봉사활동증명서 등
- ② 발급 방법

무인발급(자동증명발급기)	창구발급	어디서나 민원(FAX 민원) 발급
① 발급장소: 학생지원팀 (N109)호 앞 ② 이용시간: 24시간 ③ 수수료: 국문 600원(1매)/ 영문 1000원(1매)	① 학생지원팀: N109호 ② 이용시간: 평일 오전 8시 30분~ 5시 30분 ③ 수수료: 국문 600원(1매)/영문 1000원(1매)	① 학생지원팀: N109호 ② 이용시간: 평일 오전 8시 30분~ 5시 30분

※ 관련 문의: 학생지원팀 02-2164-4732

Ⅳ. 교회법대학원 전공 및 교과과정

1. 전공 소개

2. 교과과정

1. 전공 소개

● 교회법학과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은 2019년 2월 22일 교황청 문화교육부의 설립 승인을 받은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 고등교육기관(The First Ecclesiastical Higher Education Institution)이다. 석사과정 졸업 후에는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와 함께 교황청 문화교육부 인준 교회법 석사(J.C.L: Juris Canonici Licentia)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다.

● 모집 과정

- 1) 교회법대학원 교회법학과 제1과정(예비과정 - 교과과목 참조)
- 2) 교회법대학원 교회법학과 제2과정(석사과정 - 교과과목 참조)

● 수업 연한

과정	대상자	수학기간
제1과정(예비과정)	일반대학 학사 학위 소지자	2년
제2과정(석사과정)	신학 학사(가톨릭 교회) 학위 소지자 또는 제1과정 수료자	3년

※ 제1과정(예비과정)에 입학한 자는 제1과정(예비과정) 이수 후, 제2과정(석사과정)에 입학할 경우 수학 기간은 총 5년임.

2. 교수 소개

교수 명	담당 교과목
김효석	일반규범, 혼인법, 이태리어, 혼인 무효 소송 실습, 논문 작성
한영만	교회 형법, 법철학, 법신학, 교회공법, 교회행정법, 동방교회법, 세미나, 특수 소송 절차
안수배	이태리어, 라틴어
지용식	교회 재산법, 로마법, 교회법원사, 교회법제사, 민법상 혼인법,
김현조	그리스도교 신자, 교회의 교계 구조,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교회의 성화 임무, 라틴어

3. 졸업 후 진로: J.C.L은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교회법 석사학위로서 전 세계 가톨릭 교회 법원 및 교구청, 수도회 각종 행정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음.

2. 교과 과정

(1) 교회법대학원 교회법학과 제1과정(예비과정): 62학점 이상

● 제1과정 교과목

과목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점
CP001	논리학	기초필수	3
CP002	철학적 인간학	기초필수	3
CP003	형이상학	기초필수	3
CP004	윤리학	기초필수	3
CP005	성서입문	기초필수	3
CP006	초급 라틴어 I	기초필수	2
CP007	초급 라틴어Ⅱ	기초필수	2
CP008	초급 라틴어Ⅲ	기초필수	2
CP009	초급 라틴어Ⅳ	기초필수	2
CP010	계시론	기초필수	3
CP011	삼위일체	기초필수	3
CP012	그리스도론 / 마리아론	기초필수	4
CP013	교회론	기초필수	3
CP014	고대교회사	기초필수	3
CP015	성사총론/세례, 견진	기초필수	3
CP016	은총론	기초필수	2
CP017	기초윤리신학	기초필수	3
CP018	교회법 총론 I	기초필수	3
CP019	전례학입문	기초필수	2
CP020	윤리덕/정의	기초필수	2
CP021	생명윤리	기초필수	2
CP022	혼인과 가정, 사랑	기초필수	3
CP023	교회법 총론Ⅱ	기초필수	3

(2) 교회법대학원 교회법학과 제2과정(석사과정): 88학점 이상

● 제2과정 교과목

과목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점
CL001	일반 규범 I	전공필수	2
CL002	일반 규범 II	전공필수	2
CL003	그리스도교 신자 I	전공필수	2
CL004	그리스도교 신자 II	전공필수	2
CL005	교회의 교계 구조 I	전공필수	3
CL006	교회의 교계 구조 II	전공필수	3
CL007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I	전공필수	2
CL008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II	전공필수	2
CL009	교회의 교도 임무	전공필수	2
CL010	교회의 성화 임무 I	전공필수	2
CL011	교회의 성화 임무 II	전공필수	2
CL012	혼인법 I	전공필수	4
CL013	혼인법 II	전공필수	4
CL014	교회 재산법	전공필수	2
CL015	교회 형법	전공필수	2
CL016	소송법 I	전공필수	2
CL017	소송법 II	전공필수	2
CL018	특수 소송 절차 I	전공필수	3
CL019	특수 소송 절차 II	전공필수	2
CL025	이태리어 I	전공필수	P/F
CL026	이태리어II	전공필수	P/F
CL027	이태리어III	전공필수	P/F
CL028	이태리어IV	전공필수	P/F
CL029	이태리어 V	전공필수	P/F

CL030	법철학	전공필수	2
CL031	법신학	전공필수	2
CL032	교회공법	전공필수	2
CL033	로마법	전공필수	2
CL034	교회법원사	전공필수	2
CL035	교회법제사	전공필수	2
CL036	의료법	전공필수	2
CL037	교회행정법	전공필수	2
CL038	동방교회법	전공필수	2
CL039	지역교회법	전공필수	2
CL040	혼인 무효 소송 실습	전공필수	3
CL041	민법상 혼인 소송 실무	전공필수	2
CL042	세미나	전공선택	2
CL043	논문 작성	전공필수	2
CL044	교황청 문헌 강독	전공선택	2
CL045	교회법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론	전공선택	2
CN041	민법상 혼인법	전공선택	2
CS001	라틴어 I	전공필수	2
CS002	라틴어 II	전공필수	2
CS003	라틴어 III	전공필수	2
CS004	라틴어 IV	전공필수	2
CS005	라틴어 V	전공필수	2

※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에서 지정한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최소한 88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5학기 이상 이수한 자 중에 79학점 이상을 평점평균 3.0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79학점 이상을 취득한 후 논문 지도교수 지도하에 학위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V. 부 록

1. 학위청구논문 작성 및 체제

2. 성심교정 배치도

1. 학위청구논문 작성 및 체제

교회법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작성 및 체제

1. 작성방법

- 1) 학위논문은 횡서로 국문,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하되 전공의 특성에 따라 외국어로 작성할 수도 있다.
- 2)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할 경우 본문의 글씨체는 신명조, 줄 간격은 200, 글자크기는 11 Point, 정렬방식은 혼합, 글은 횡서로 한다.
- 3) 목차
 - (1) 목차는 3단법(편·장·절)을 적용하는 것이 무난하나,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 한글 등을 혼용하여 작성할 수도 있다.
 - (2) 항목구분을 세분하여 번호를 표시할 때는 한 칸씩 안으로 들여 짜기로 작성한다.
- 4)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인용 문헌과 보충 설명은 각주로 하여 일련 번호를 붙이고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각주의 설명은 해당 면의 아래에 기재한다.
- 5)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논문작성에 참고가 된 모든 문헌을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작성한다.
- 6) 부록의 내용은 주로 부가적 설명, 조사양식, 설문지, 수표, 도표, 법조문, 연표, 지도, 문서 등으로 하고, 부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록이라고 쓴 별지를 앞에 붙인다.
- 7) 논문초록
 - (1) 초록은 논문의 내용과 결론에 관해서 간략하게 구체적인 개요를 수록해야 하며, 논문 수록 내용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언급되어야 한다.
 - (2) 초록의 표현은 완전히 연결된 문장 형식으로 쓰여져야 한다.
 - (3) 본문이 국문인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본문이 외국어일 경우에는 국문으로 작성한다.
- 8) 기타 상세한 것은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의 지침에 따른다.

2. 논문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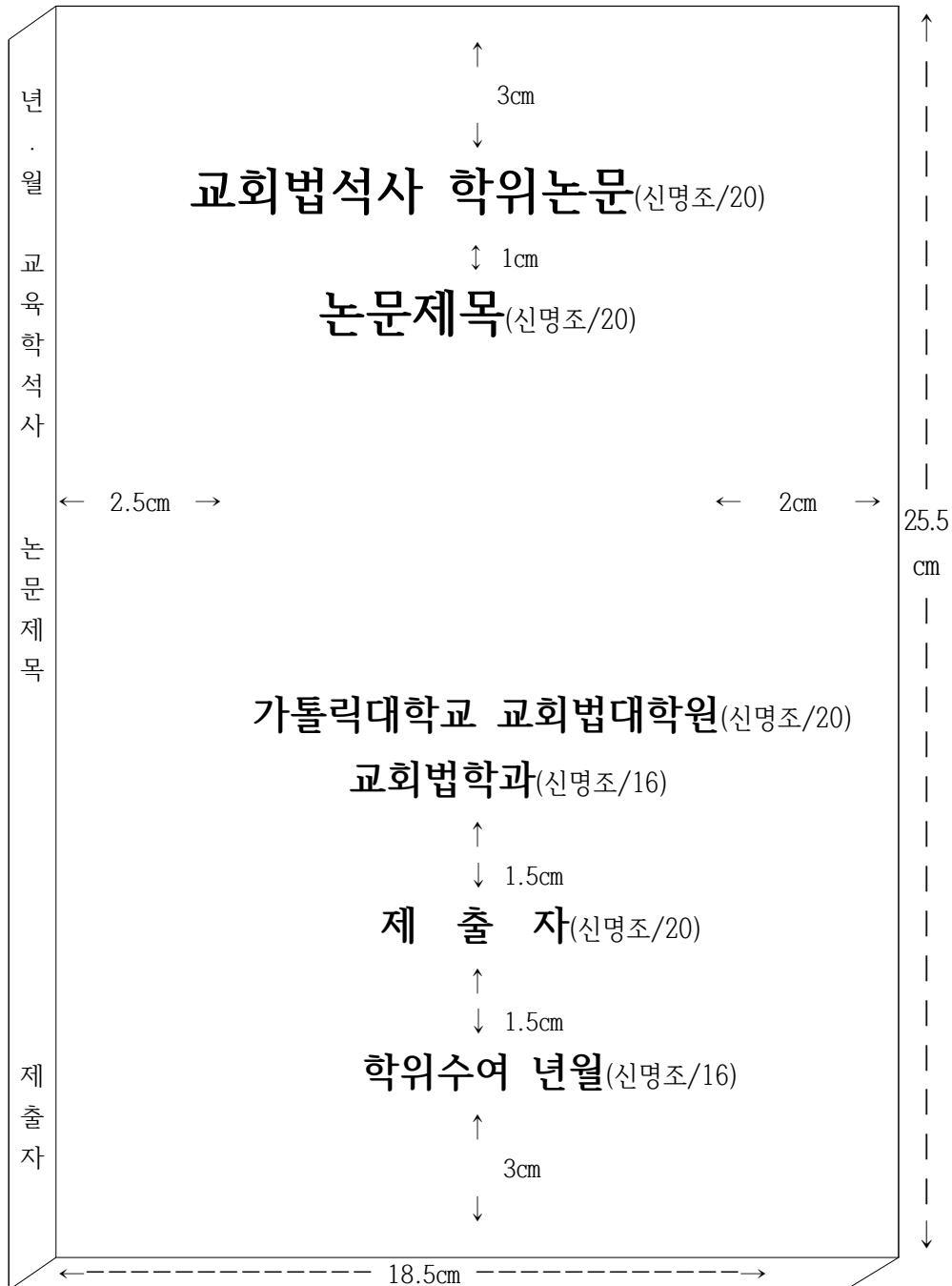
- 1) 겉표지 (표제지)
- 2) 속표지
- 3) 논문제출서 (한글)
- 4) 인준서 (한글)
- 5) 감사의 글
- 6) 목차

- 7) 표 및 그림 목차 (필요할 경우)
- 8) 논문개요 (본문과 동일한 언어로 쓴다) - 초록
- 9) 본문 (서론, 본론, 결론 포함, 각 전공별 지정 양식에 따름)
- 10) 참고문헌
- 11) 부록, 색인 기타 (필요할 경우)
- 12) 영문 논문제출서
- 13) 영문 인준서
- 14) ABSTRACT (영문초록)

3. 논문 작성 양식

- 1) 용 지 : 70파운드 이상의 백색 모조지 또는 이와 동등한 두께의 등사용 백상지
- 2) 제판종류 : 4.6배판 (18.5cm×25.5cm)
- 3) 제본방식 : 클로스 양장
- 4) 지면(내용)은 가로 14cm×세로19cm로 한다.
- 5) 학위수여 년월 : ○○○○년 2월(후기일 경우 8월)
- 겉표지 속표지에 표기
- 6) 제출 년월 : 논문을 제출한 날이 속하는 년 월만 기재
예) 한글 - 2000년 9월, 영문 - September 2000
 한글 - 2000년 11월, 영문 - November 2000
- 7) 논문 초록집 제작용 초록을 제본된 학위논문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 8) 제출부수 : 하드카바 6부(1부는 심사위원이 인정하여 날인 받은 것)

1. 겉표지



2. 속표지

교회법석사 학위논문(신명조/20)

논문제목(신명조/20)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신명조/20)

교회법학과(신명조/16)

제 출 자(신명조/20)

학위수여 년월(신명조/16)

3. 논문 제출서 [한글]

한글 논문제목(신명조/20)

영문 논문제목(신명조/16)

지도 : 교수 (신명조/20)

이 논문을 교회법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신명조/16)

제 출 년 월(신명조/16)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신명조/20)

교회법학과(신명조/16)

제 출 자(신명조/20)

4. 인준서 [한글]

○○○의 교회법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제출자 이름) (신명조/20)

주심_____ (인)

위원_____ (인)

위원_____ (인) (신명조/20)

인준 년 월 (신명조/16)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신명조/20)

5. 감사의 글

감사의 글 (진하게/20)

가나다라 (본문시작, 신명조/11)

6. 목차

목 차 (신명조/20)

I . 감사의 글	
II . 논문개요(초록)	
III . 본문(각 전공별 지정 양식에 따름)	
IV . 참고문헌	
V . 부록 . 색인 . 기타(필요 경우)	
VI . 영문 논문제출서	
VII . 영문 인준서	
VIII. 영문 초록(ABSTRACT)	

(줄간격/350)

- ※ 한글 논문일 경우 맨 끝에 영문초록(Abstract)
- ※ 영문 논문일 경우 맨 끝에 한글초록(Ⅱ와 Ⅷ을 바꿈)
- ※ 논문작성시 상단의 작성 요령 참조

7. 논문개요

논문개요(초록) (신명조/20)

가나다라 (본문시작, 신명조/11, 줄간격/200)

8. 본문 (서론, 본론, 결론 - 각 전공별 지정 양식에 따름)

1. 서론 (신명조/20)

가나다라 (본문시작, 신명조/11, 줄간격/200)

9. 참고문헌

참고문헌(신명조/20)

(신명조/11, 줄간격/200)

10. 영문 논문제출서

영문 논문제출서 (중고딕/20)

A THESIS SUBMITTED TO THE CANON LAW INSTITUT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중고딕 13)

학 위 명(영문, 중고딕 16)

By

제 출 자 이 름(영문, 중고딕 16)

SEOUL, KOREA(중고딕13)

제 출 년 월(영문,중고딕13)

11. 영문 인준서

The undersigned certify that they have read this thesis and that in their opinion it is satisfactory in scope and quality as a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Canon Law. (중고딕/13)

THESIS COMMITTEE

Chairman _____
(Kil-Dong Hong)

Member _____
(")

Member _____
(")

인 준 년 월 (중고딕/13)

CANON LAW INSTITUT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중고딕/15)

* 심사위원 이름 위에 sign 할 수 있는 간격을 둘 것.

12. 영문 초록

ABSTRACT (신명조/20)

Abcdef (본문시작, 신명조/11)

초록 [초록집 발간용, 심사가 종료된 후 한글 및 영문 작성]

한글 논문제목
(영문제목)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회법학과
(Canon Law, Canon Law Institut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지도: ○ ○ ○ 교수〉
〈Director: Prof. Kil-Dong Hong〉
제 출 자

초록 내용

1. 논문심사가 종료된 후 작성(한글로 작성)
2. 작성요령 : 컴퓨터 한글(HWP 3.0 이상)로 작성
용지선택 및 여백주기 : A4 (위쪽, 아래쪽, 왼쪽-30, 오른쪽-20)
글자선택 및 줄간격 : 제목-크기 12, 본문-크기 10
줄간격 - 130

2. 성심교정 배치도

- 교회법대학원 사무실: 03. 김수환관 3층 K338호
- 국제교류관: 21. 국제교류관



- | | |
|---------------|---------------------|
| ① 정문 | ⑫ 하늘동산 |
| ② 창업보육센터 | ⑬ 미카엘관 - 행정동 (H관) |
| ③ 김수환관 (K관) | ⑭ 미카엘관 - 교수연구동 (T관) |
| ④ 스테파노 기숙사 | ⑮ 베리타스관(중앙도서관) |
| ⑤ 안드레아 기숙사 | ⑯ 성심관 (SH관) |
| ⑥ 마리아관 (M관) | ⑰ 정진석 추기경 약학관 (NP관) |
| ⑦ 니콜스관 (N관) | ⑱ 콘서트홀(C관) |
| ⑧ 밤비노관 (BA관) | ⑲ 대운동장 |
| ⑨ 다솔관 (D관) | ⑳ 바오로관(사제관) |
| ⑩ 비르투스관 (V관) | ㉑ 국제교류관 |
| ㉒ 학생미래인재관(B관) | ㉒ 예수성심성당 |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요람 2025

2025년 1월 일 인쇄

2025년 1월 일 발행

발행인 최 준 규

발행처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주소 : (1466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K338

전화 : 02) 2164-6521 팩스 : 02) 2164-4977